
2025 수지초등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

1차 개정 : 2025.03.24.

2차 개정 : 2026.01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수지초등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라 칭하며 본 규약은 『수지초등학교 인사 관리 규정』, 약칭 『인사 내규』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수지초등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회에서 규정한 내용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적용한다.

제2장 인사 자문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제4조 【조직】 본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교감 및 교무부장)과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며, 10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장: 교감
2. 간사: 교무
3. 위원 : 각 학년 및 교과전담교사를 대표하여 1명씩을 추천한다.

제5조 【기능】 본회는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능을 지니며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1. 학년, 학급 담임 (통합·특수 포함) , 교과전담교사 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업무 분장 배정에 관한 사항
3.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4. 인사 관리규약의 제·개정
5. 표창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급 증가 감축 시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7. 교사 전보 내신에 관한 사항
8.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9. 교원의 겸직 및 외부 강의에 관한 심사 및 심의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자격 및 임무】

1. 위원장은 인사담당 교감이 당연직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총괄한다.
3. 위원장 유고시는 교무기획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1. 위원 임기는 학년도와 같게 하며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2. 임기 중 결원이 발생 시 그 후임자는 해당 학년에서 선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8조 【회의 소집】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의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9조 【의결 및 결정】

1.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찬반 동 수일 때는 위원장의 의사로 의결한다.
3. 회의 결과는 학교장에게 전달하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

제3장 담임·교과 전담·업무분장

제10조 【담임·교과 전담·업무분장 기초자료 제출】 학년별 업무를 조정하고

담임과 업무를 연계(매칭)한 학년 및 업무 분장표를 작성한다. 전 교사는 담임과 업무분장 기초자료 및 희망원을 인사담당 교감에게 제출한다. 단 전임 교사는 인사 발령 후에 제출한다.

제11조 【학년, 담임, 전담 배정 원칙】 학년 학급담임 배정은 본인의 희망을 원칙으로 하며 제12조 【학년, 담임, 교과전담 배정 방법】에 근거하여 배정하되 보직교사, 학년, 학급의 최종 결정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학년, 담임, 교과전담 배정 방법】

1. 학년과 업무를 연계한 업무분장표를 작성한다. (이하 「학년·업무 분장표」로 함)
2. 「학년·업무 분장표」 선택 순위는 ① 본교 「학년, 전담 점수」 높은 순, ② 본교 경력 높은 순, ③ 나이스 총경력 (임용전 경력 제외) 높은 순, ④ 생년월일 빠른 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3. 「학년·업무 분장표」 선택 순위를 다음과 같다.
 - 가. 1순위: 직전년도 본교 근무 58세 이상 교사
 - 나. 2순위: 직전년도 본교 부장 교사, 직전년도 부장 후 휴직, 전직, 파견 후 복직, 복귀 시 휴직, 전직, 파견 직전년도 부장 경력 인정
 - 다. 3순위: 본교 재직 기간 중 5년 이내 경력만으로 산정한 본교 「학년, 전담 점수」와 본교 경력, 총경력, 생년월일 기준 (제 12조 2항 참고)
 - 라. 4순위: 일반 전보 내신 자 중 미발령 자
 - 마. 5순위: 전직·파견 종료 복귀 교사
 - 바. 6순위: 휴직 후 복직 교사
 - 사. 7순위: 1~5순위까지 선택 순위 포기한 교사
 - 아. 8순위: 전임 교사 (① 나이스 총경력 (임용전 경력 제외) 높은 순→② 생년월일 빠른 순)
4. 「학년·전담」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전담
점수	5	4	4	4	5	6	3.5
※ <학년·전담 점수>는 실제 근무(휴가기간 포함, 휴직기간 미포함) 기간으로 환산한다. (예-1학년 6개월 근무 시 2.5점)							

제13조 【학년, 담임, 전담 배정 시 예외 및 고려 사항】

1. 본교 재직기간 동안 같은 학년 및 교과 전담은 연임 3년까지 할 수 있다.
2. 당해년도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장은 학년 또는 교과전담에 희망을 받아 우선 배정한다.(제13조 1항 예외 적용)
3. 직전년도 부장교사는 당해년도 같은 학년 및 교과 전담 희망할 수 있으며 연임 4년까지 할 수 있다. (제13조 1항을 예외 적용)
4. 「**학년·업무 분장**」 선택 순위를 포기한 교사는 제 12조 3항 사항 7순위에서 **비선호 학년, 전담을 선택할 수 있다. (제 13조 1항 예외 적용)**
5. 동일 학년에 2급 정교사와 만 58세 이상 교사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구성한다.
6. 학년·학급담임· 교과전담 배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학년별 고루 배정할 수 있다.
 - 가. 출산, 난임 시술 예정
 - 나. 휴직 예정
 - 다. 자신 건강 상태
 - 라. 교원의 본교 재학 자녀 학년
 - 마. 교원의 특기와 적성 및 학교 상황 등.
- 6 「학년·전담」 점수가 동일한 학년의 업무 배정 시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고루 배정할 수 있다.
- 7 업무(담당자) 변경 및 폐지 시 업무 분장 및 담당자를 조정 할 수 있다.

제14조 【학급 담임 결원 시 인사이동 고려 사항】 학급수 변경,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담임 결원 시 담임 배정(발령)은 다음 순으로 한다. 단 2순위~4순위 해당하는 전담교사의 담임 배정(발령)시 해당 전담교사의 요구사항 (담임 교체 발령 등)을 반영한다.

1. 1순위: 복직 교사
2. 2순위: 희망하는 전담 교사

3. 3순위: 본교 경력이 낮은 전담 교사

4. 4순위: 본교 경력이 낮은 전담 교사 중 생년월일이 늦은 자

제4장 보직교사 임용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⑤항】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5조 【부장교사의 임용 및 역할】

1. 부장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1급 정교사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2급 정교사도 임용할 수 있다.)
2. 부장교사는 경력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3. 【희망원 제출】 부장 교사 및 【순환보직제】 부장 교사는 다음 순에 의해 임명한다. 단 교무기획부장과 교육과정부장은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적용하지 않고 우선 임명할 수 있다.

1순위 【희망원 제출】 교사 중 본교 경력이 많은 자

2순위 【희망원 제출】 교사 중 총 경력이 많은 자

3순위 【희망원 제출】 교사 중 생년월일이 빠른 자

4순위 【순환 보직제】 교사 중 본교 경력이 많은 자

5순위 【순환 보직제】 교사 중 총 경력이 많은 자

6순위 【순환 보직제】 교사 중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6조 【부장교사의 보직 발령】

1. 부장교사의 보직은 본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 등에 따라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2. 학교 상황 및 부장 교사의 건강상 문제로 보직 변경 필요 시 임용권자가 보직 교사를 변경하여 발령할 수 있다.

제17조 【부장교사의 순환보직제】

1. 본교 교사는 본교 재직기간 동안 보직교사를 1회 이상 역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수지초등학교 「순환보직제」로 칭한다.
- 2 순환보직제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기 보직교사

나. 55세 이상인 자

다. 출산 및 난임 시술 예정자(※ 증빙서류 제출)

라. 2개월 이상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자 (※ 증빙서류: 2개월 이상의

치료내용이 명시 된 의사 진단서 제출)

제18조(부장교사의 특전)

1. 당해년도 부장담임교사는 학급을 우선 선택할 수 있다.

제19조 【부장교사의 겸임 제외 사유】 부장교사는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부장교사 겸임을 면할 수 없다.

1. 학급의 증감이 있을 때.
2. 휴직,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3. 형사 사건과 관련 된 처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학교로 전보된 경우.
5. 직무 수행 능력이 극히 부족한 경우.
6. 감사 결과 인사 조치 된 경우.

제6장. 표창 대상자 선발 규정

제20조 【교원포상 후보자 선정】

1. 포상에 대한 사안이 발생 시 전체 교원에게 홍보하고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공적 심의 기준에 맞는 적임자를 아래 3항~5항의 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장에게 2배수로 추천하며, 학교장은 이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2. 포상 후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교 재직 1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3. 표창 대상자 선정 시 다음 순으로 결정한다. (가항~아항 순)
 - 가. 해당 공적이 탁월한 자
 - 나. 본교 근무 경력이 많은 교원
 - 다. 본교 근무 경력이 같을 때는 부장 경력이 많은 교원
 - 라. 본교 근무 경력과 부장 경력이 같을 때 총 경력이 많은 교원
 - 마. 특수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교원
 - 바. 학급 경영 실적이 우수한 교원
 - 사. 기타 공적이 우수한 교원
4. 훈격이 다른 표창 대상자를 동일 시기에 추천할 경우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표창

대상자를 2배수로 정하여 추천한다 (예 : 교육감 표창과 장관 표창 대상자를 동시에 할 경우 해당).

5. 동일 분야의 표창 대상자 추천 시 훈격에 관계 없이 1회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교원은 훈격이 다른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6. 공문에 의거 표창 대상자로 지명된 교원은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적조서를 제출한다.

제7장 교사 전보 내신 및 기타

제21조 【목적】 경기도교육청 교원 인사 관리 원칙에 의하여 정기 인사 시 교사 전보 내신에 관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신뢰롭고 원만한 교사의 전보 인사를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22조 【전보】 전보 희망하는 교사가 본교 재직 교원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보 내신한다.

1. 본교 실근무 년, 월, 일 수가 많은 교사
2. 교육 총경력이 많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빠른 교사

제23조 【학급 감축 시 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1. 희망자가 많을 시 다음 순으로 내신 한다.
 - 가. 1순위 : 본교 근무 경력이 많은 자
 - 나. 2순위 : **나이스 총경력 (임용전 경력 제외)**이 적은 자
 - 다. 3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희망자가 없을 시 다음 순으로 내신한다.
 - 가. 1순위 : 본교 근무 경력이 적은 자
 - 나. 2순위 : **나이스 총경력 (임용전 경력 제외)**이 적은 교사
 - 다. 3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제24조 【교원 인사에 관한 기타 사항】

1.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교원 인사에 관한 협의 내용이 발생 시 인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전체 교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전 교원 의견 수렴(투표 등)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